



제438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대표발의의원 요청에 따른 제안설명 생략〉

■ 박균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145호)

2026. 8.

국 회 운 영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경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III . 검토의견	3

I . 제 안 경 위

1. 발 의 자 : 박균택 · 이성윤 · 박 정 · 박홍배 · 주철현 · 염태영 ·
이건태 · 박지원 · 맹성규 · 박용갑 · 허 영 · 김문수 ·
양부남 · 김종민 · 김주영 · 김동아 · 박해철 · 한민수 ·
황명선 · 박상혁 · 황정아 · 윤후덕 · 권칠승 · 한준호 ·
정일영 · 전진숙 · 김승원 · 장경태 · 김용민 · 김한규 ·
김원이 · 이광희 · 정진욱 · 김기표 · 서영교 · 강경숙 ·
정춘생 의원(37인)

2. 제 안 일 : 2026. 6. 9.

3. 회 부 일 : 2026. 7. 1.

※ 의안번호 : 19145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원회가 안건을 심사할 때 제안자로부터 그 취지의 설명을 듣도록 하는 제안설명 절차를 규정하고, 이를 서면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안설명서를 제출받아 회의록에 부록으로 첨부하고 있음.

그런데 의안문서에 이미 제안이유가 포함되어 있어 제안설명이 불필요한 경우가 있고, 특히 서면으로 제안설명서를 제출하는 것은 중복적 절차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표발의의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설명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 및 안건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이 없는 국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8조제11항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대표발의의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가 해당 안건의 취지에 대한 설명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58조제11항 신설).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8조(위원회의 심사) ① ~ ⑩ (생략) <u><신설></u>	제58조(위원회의 심사) ① ~ ⑩ (현행과 같음) ⑪ 위원회는 제79조제4항에 따른 대표발의의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설명을 생략할 수 있다.
◦ 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현행법 제58조제1항은 위원회가 안건을 심사할 때 먼저 안건의 취지에 대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대체토론, 축조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

안건의 취지에 대한 설명은 통상 ‘제안설명’으로 지칭되며, 안건의 제안자가 그 제안 배경과 주요내용 및 필요성 등을 위원에게 설명하는 것으로서 위원회 심사의 첫 단계에 해당함.

제안설명은 의원발의 의안의 경우 대표발의의원이, 정부제출 의안의 경우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내용이 간단하거나 별도의 설명을 들을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경우 서면으로 대체하고 있음.

1) 「국회법」 제58조(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먼저 그 취지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안건 전체에 대한 문제점과 당부(當否)에 관한 일반적 토론을 말하며 제안자와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과 축조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그런데, 의안에는 이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 위원회 운영에서 안전에 대한 제안설명이 대부분 서면으로 대체됨에 따라 제안설명서의 내용이 의안에 기재된 내용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제안설명서를 별도로 작성·제출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종이문서가 생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대표발의의원이 별도의 제안설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생략을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가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복적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위원회 운영 및 안전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제안설명은 의안에 기재된 내용을 단순히 반복하는 절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안전의 제안자가 제안 배경과 정책적 필요성 및 주요 쟁점 등을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에게 설명함과 동시에, 제안자의 의도와 책임을 공식적인 회의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첫째, 현행법 제79조제4항은 의안의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되, 서로 다른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하는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을 3명 이내에서 명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²⁾

2) 「국회법」 제79조(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④ 제3항에 따라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할 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明示)하여야 한다. 다만, 서로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는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는 경우(교섭단체에 속하는 의원과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소속 교섭단체가 다른 대표발의의원(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을 포함할 수 있다)을 3명 이내의 범위에서 명시할 수 있다.

그런데 개정안은 ‘대표발의의원’을 제안설명 생략 요청권자로 규정하면서, 대표발의의원이 복수인 경우 그 중 1명의 요청으로 충분한지 또는 전원의 요청이 있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음.

또한, 현행법상 의안의 발의자의 수에는 제한이 없어 1명의 발의의원이 찬성의원 9명 이상과 의안을 발의할 수 있는데,³⁾ 이 경우 해당 의원은 ‘대표발의의원’이 아닌 ‘발의의원’에 해당하므로, 개정안에 따른 요청권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됨.

따라서, 발의의원이 1명인 경우와 대표발의의원이 복수인 경우의 요청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둘째, 개정안은 ‘위원회는 ... 설명을 생략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제안설명 생략 여부를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는지, 또는 위원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아니함.

제안설명 생략 여부를 위원회 의결로 결정하도록 할 경우 개정안이 의도하는 절차 간소화의 효과가 제한될 수 있는 반면, 위원장이 단독으로 결정하도록 할 경우 다른 위원들의 심사권과 제안설명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결정 절차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3) 「국회법」 제79조(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① 의원은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의안을 발의하는 의원은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찬성자와 연서하여 이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할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법률안 제명의 부제(副題)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한다.

참고로, 현행법은 위원회 심사절차 중 ‘축조심사 생략’,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또는 청문회 생략’, ‘숙려기간 단축’, ‘심사보고서의 비용추계서 첨부 생략’ 등은 위원회 의결로,⁴⁾ ‘소위원회 직접 회부’ 및 ‘입법예고 생략’ 등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⁵⁾

셋째, 개정안은 ‘대표발의의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어 제안설명 생략은 의원발의 의안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제안설명과 의안문서 간의 중복을 해소하고 위원회 운영 및 안건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정부제출 의안에 대해서도 국무위원 등의 요청에 따라 제안설명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016

4) 「국회법」 제58조(위원회의 심사) ⑤ 제1항에 따른 창조심사는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회는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59조(의안의 상정시기) 위원회는 의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의안을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 략)

제66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③ 제1항의 안건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고 위원회에서 수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보고서에 그 안건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하여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 의결로 추계서 첨부 생략할 수 있다.

5) 「국회법」 제58조(위원회의 심사)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된 안건이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경우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안건을 바로 해당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함께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제82조의2(입법예고) ①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회부된 법률안(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제외한다)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생 략)

